**숭실대학교 게임동아리 SSANDBOX 회칙**

[시행 2022. 12. 23.] [회칙 제3호, 2022. 12. 16.,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회칙의 목적) 숭실대학교 게임동아리 SSANDBOX(이하 ‘동아리’)의 회칙은 동아리의 기본이 되어 회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

제2조(동아리의 목적) ① 본 동아리는 게임 문화 인식 개선 및 대학생 E-Sports 문화 선도에 일조한다.

② 본 동아리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인 회원 전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제3조(소속)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중앙동아리 연합회 소속 교양분과에 속한다.

**제2편 조직**

**제1장 회원**

제4조(회원) 본 동아리의 회원은 총원명부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제5조(회원의 구성) 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정회원은 총원명부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을 말한다.

③ 준회원은 총원명부에 동아리 대표팀과 OB로 등록된 회원을 말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동아리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활동에 성실히 임한다.  
②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1.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언행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원활한 동아리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4. 그 외 부적절한 행위

제7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동아리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동아리에 대하여 회원으로서 정당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동아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회원의 권리)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1. 동아리 대표팀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2. 동아리 내부 행사의 참여 주체가 되는 경우  
3. 그 외 운영진 회의를 거쳐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제9조(가입) ① 본 동아리의 지원 자격은 동아리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숭실대학교 학부생으로 한정한다.

② 정기 모집은 매 학기 초에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상시 모집은 해당 학기 운영진의 재량으로 한다.

③ 본 동아리의 가입을 위해서는 면접 및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후 총원명부에 기재됨과 동시에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9조의2(면접) ① 가입 면접은 진행자의 책임하에 공정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면접자는 면접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면접 진행자는 이를 면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탈퇴 의사는 운영진 전체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후 총원명부에 반영됨으로써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11조(제한) 징계를 받아 퇴출된 자는 다시 회원이 될 수 없다.

**제2장 운영진**

**제1절 운영진 일반**

제12조(운영진) ① 운영진은 총원명부에 운영진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② 운영진은 회장단, 정규 운영진, 수습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제13조(운영진의 직무) ① 운영진은 동아리 목적 실현을 위한 봉사자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임한다.  
1. 동아리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기획 및 진행  
2. 동아리 홍보  
3. 기타 전반적인 동아리의 운영  
② 운영진은 담당한 업무를 해태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절 회장단**

제14조(회장단) ① 회장단은 총원명부에 회장단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②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로 구성한다.  
③ 회장단은 타 회장단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15조(회장) ① 회장은 동아리를 대표하는 직위로서 동아리의 대내외적 행사의 총책임자가 된다.

② 회장은 회칙의 취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은 운영진 회의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내부 운영서류와 접수된 공문을 관리하고 대외적인 서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동아리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운영진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 및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7조(회장의 권한) ① 회장은 동아리 공금 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총무의 동의 없이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장은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타 운영진에게 이양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진은 이를 대리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동아리 전반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 후보의 자격은 이전 학기에 운영진으로서 활동한 자로 한정한다.

② 회장 후보의 등록은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회장 선출 투표는 해당 학기 종강총회 시 진행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투표 동률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1. 회장단 경험이 있는 자  
2. 동아리 가입 일시가 앞선 자  
3. 운영진 가입 일시가 앞선 자  
4. 생년월일이 앞선 자

제19조(회장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해당 학기에 한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은 운영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회장은 임기 종료 시,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차기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동아리를 대표하는 직위로서 동아리의 대내외적 행사의 부책임자가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부회장의 직무) ① 부회장은 총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한다.  
② 부회장은 OB와의 연락에 관한 총책임자가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동아리 연합회 및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우선하여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④ 부회장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부회장의 선출과 임기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3조(서기) 서기는 동아리 운영을 기록으로 보관하며, 문서 관리의 총책임자가 된다.

제24조(서기의 직무) ① 서기는 동아리 문서의 갱신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② 서기는 동아리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며, 이를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서기는 동아리 모임의 진행을 맡는다.

제25조(서기의 지정) 총무는 종강총회 후 차기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로 지정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제26조(총무) 총무는 동아리 공금 관리에 대한 총책임자가 된다.

제27조(총무의 직무) ① 총무는 동아리 공금의 통장 및 카드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관리한다.  
② 총무는 공금소비에 관한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 이를 운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무는 공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총무는 매월 말까지 당월 회계장부를 공시하여야 하며, 총회 시 예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총무의 권한) 총무는 공금소비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총무의 지정에 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절 정규 운영진**

제30조(정규 운영진) 정규 운영진은 동아리 총원명부에 정규 운영진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제31조(정규 운영진의 직무) 정규 운영진은 운영진 일반의 직무를 지닌다.

제32조(정규 운영진의 권한) ① 정규 운영진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장 및 부회장에게 모임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규 운영진은 운영진의 복지에 관하여 최장 및 부회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규 운영진은 필요한 경우 회장 부회장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정규 운영진의 선출) ① 정규 운영진은 기존 운영진들의 심사에 의해 선출된다.

② 정규 운영진 후보 자격은 한 학기 이상 활동한 정회원에 한한다.

제34조(정규 운영진의 임기) ① 정규 운영진의 임기는 해당 학기에 한하며, 차기 회장단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정규 운영진은 임기 종료 시,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차기 운영진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수습 운영진**

제35조(수습 운영진) 수습 운영진은 신입 회원 중 운영진으로 선출된 자로서 동아리 총원명부에 수습 운영진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제36조(수습 운영진의 직무) 수습 운영진은 운영진 일반의 직무를 지닌다.

제37조(수습 운영진의 권한) 수습 운영진은 정규 운영진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정규 운영진의 동의 없이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조(수습 운영진의 선출) ① 수습 운영진은 기존 운영진들의 심사에 의해 선출된다.

② 수습 운영진 후보 자격은 동아리 신규 정회원에 한한다.

제39조(수습 운영진의 임기) ① 수습 운영진의 임기는 해당 학기에 한하며, 차기 회장단의 동의 하에 연임이 가능하다.

② 수습 운영진은 연임 시 정규 운영진으로 자동 승격된다.

**제3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0조(비상대책위원회) ①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의 후보 출마 또는 차기 운영진 지원자가 없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진의 역할을 대체한다.  
② 운영진 총원의 비밀투표에서 최다득표한 회원이 임시회장직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총책임자가 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제41조(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이 선출되면 해체된다.

**제3편 활동**

**제1장 행사**

제42조(행사의 기획) ① 동아리 행사에 대한 기획은 운영진이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배하여 진행한다.  
② 회원은 행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운영진에게 안건으로 제의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안건을 제의한 회원은 당해 행사를 담당할 수 있다.

제43조(행사의 기록) ①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운영진에 의해 동아리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운영진은 진행된 행사 기록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동아리의 활동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고, 동아리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2장 모임

제44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동아리 운영을 결산하고 주요 사안 및 기획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다.  
② 정기총회는 주요 안건 상정 및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결된 안건은 동아리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이후와 종강 전후에 각각 개최한다.  
④ 정기총회의 진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석인원 확인  
2. 개회선언  
3. 활동실적 보고  
4. 활동계획 보고  
5. 공금관리내역 및 계획  
6. 투표 안건 의결  
7. 건의사항  
8. 폐회선언

제45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학기 중 동아리 운영의 주요 사안에 관하여 회원의 의견을 묻거나 투표를 통하여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최된다.   
② 임시총회는 주요 안건 상정 및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결된 안건은 동아리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로 개최될 수 있다.  
1. 회장의 소집  
2. 운영진 과반수의 요청  
3. 정회원 과반수의 요청

제46조(출석) ① 회원은 정기총회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운영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사표명이 가능한 모임에 불참하는 회원은 당해 모임의 경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7조(운영진 회의) ① 운영진 회의는 동아리 운영의 기획 및 집행을 위해 운영진들에 의해 개최된다.  
② 운영진 회의는 매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기 운영진의 재량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③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위해 동아리방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48조(공금) ① 공금은 정기회비 및 기부금을 포함한 기타소득으로 운영된다.  
② 공금은 대내외적인 동아리 활동 및 회원 전체를 위하여 사용된다.

제49조(회비) ① 회비는 정회원으로서 납부한다.  
② 총무는 회비 납부기간을 해당 학기 활동 시작을 전후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회비의 면제) 군휴학 중인 정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제50조(공금의 사용) ① 공금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② 행사 진행을 위해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산정하여 회장의 승인과 총무의 동의를 통해 공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운영진 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회원의 구상권) ① 회원이 사비로 공금의 사용을 대신한 경우, 그 자는 사용처, 목적, 금액 등 당해 지출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진에 제출하여 당해 비용을 운영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는 운영진 회의의 안건이 된다.

**제4편 시설**

제52조(동아리방) 동아리방은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공식적인 동아리방을 말한다.

제53조(시설의 사용) ① 운영진은 동아리방 이용수칙을 동아리방과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하고, 회원은 게시된 동아리방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운영진에 동아리방 이용수칙의 수정을 운영진 회의의 안건으로 제의할 수 있다.

**제5편 벌칙**

제54조(징계) 운영진은 회의를 통해 제6조 제3항,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6조, 제46조, 제53조 제1항을 사유로 하여 회원에게 경고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

제55조(징계위원회) ① 누적 경고가 2회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에 관한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처분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5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부회장  
2. 서기  
3. 둘 이상의 정규 운영진  
② 공금과 관련된 사안의 징계위원회는 총무를 구성원으로서 포함하여야 한다.

제56조의2(회장단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단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징계위원회는 운영진 2/3 이상이 구성원으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제57조(즉결처분) 징계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 회장단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단은 총회에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면담) 운영진은 사안에 따라서 징계처분의 결정 이전에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6편 회칙**

제59조(회칙의 개정) ①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원은 운영진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진 회의의 안건이 된다.   
②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회장단은 결정된 회칙개정을 7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2호,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